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 
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의원은 고령화 및 가구원 수 감소로

의료적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

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

요양병원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

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○ 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

‘노유자시설’은 허용되나 ‘의료시설’은 불허하고 있습니다.

○ 과거에는 노유자시설인 ‘노인의료복지시설’에 포함되었던 요양병원은

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이었으나,

2011년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의료법」 개정으로 '의료시설'로 변경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.

- 도시계획 차원의 결정이 아닌 타법 개정으로 인해 본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었던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이 금지되는 상황이 10년 넘게 방치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,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본래 조례의 취지를 되살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